

#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계획안)

거 창 군  
(사회복지과)

##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2007 ~ 56
----------	-----------

제출연월일	2007. 11. 6.
제 출 자	사회복지과장

### 1. 제안이유

2007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창군 삶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의외 8필지

나. 규 모 : 연건평 4,977㎡(지하1층, 지상3층)

○ 노인·여성복지회관 : 1동 3,009㎡, 장애인복지관 : 1동 1,968㎡

다. 주요시설

○ 노인시설

- 사무실, 홀, 강당, 체력단련실, 생활건강상담실, 건강교실, 소강당, 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휴게실 등

○ 여성시설

- 여성상담실, 취미교실, 요리교실, 자원봉사실, 어린이놀이방 등

○ 장애시설

- 사무실, 체력단련실, 수치료실, 심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자원봉사실 등

라. 위탁대상 업무

- 삶의 쉼터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관리
- 노인·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마. 위탁기간 : 5년이내

바. 조직 및 직제

- 수탁운영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편성하여 운영
- 시설운영 초기(개관시) 최소인원 운영
- 향후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추이 등을 감안 인력 조정 운영

사. 소요예산

- 개관시(10명기준) 388,372천원(도비, 46,000, 군비 342,372)편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제7조(기구 및 인원)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

#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동의안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계획안)

#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계획

2007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창군 삶의 쉼터가 종합복지 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코자 함

## I.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안) 제6조(운영) 및 제7조(기구 및 인원)

## II.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 외 8필지
- 사업기간 : 2003 ~ 2007년 12월
- 사업량 : 연건평 4,977m<sup>2</sup>(지하 1층, 지상 3층)
  - 노인·여성 복지회관 : 1동 3,009m<sup>2</sup>
  - 장애인 복지관 : 1동 1,968m<sup>2</sup>
- 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 1,945, 도비 : 2,000, 군비 : 6,055)
  - 노인·여성복지회관 : 6,000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 4,000백만원
- 개 원 : 2008년 3월(예정)

### Ⅲ. 시설 현황

동별	구분	면적(㎡)	시설내용	비고
노인 시설	지하1층	817.51	홀, 강당, 체력단련실, 샤워장,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지상1층	731.52	생활건강상담실, 건강교실,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이미용실, 화장실, 창고	
	지상2층	897.16	소강당, 소회의실, 홀, 화장실, 노래연습장, 장기, 바둑실, 포켓볼, 식당, 다목적휴게실, 온돌휴게실	
여성 시설	지상3층	563.12	취미교실, 요리교실, 홀, 자원봉사실, 어린이놀이방, 임시보호실, 여성상담실, 인터넷카페, 화장실	
소 계		<b>3,009.31</b>		
장애 시설	지하1층	503.35	수치료실, 탈의실, 목욕탕, 탈의실, 홀, 식당, 주방, 기계실, 화장실, 상담실	
	지상1층	534.81	체력단련실, 홀, 진료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관찰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접수, 안내실, 화장실	
	지상2층	438.43	사회교육실, 통합사무실, 보호작업장, 홀, 화장실	
	지상3층	490.97	강당, 녹음도서실, 컴퓨터교실, 홀, 화장실, 자원봉사자실	
	소 계	<b>1,967.56</b>		
총 계		<b>4,976.87</b>		

### Ⅳ. 조직 및 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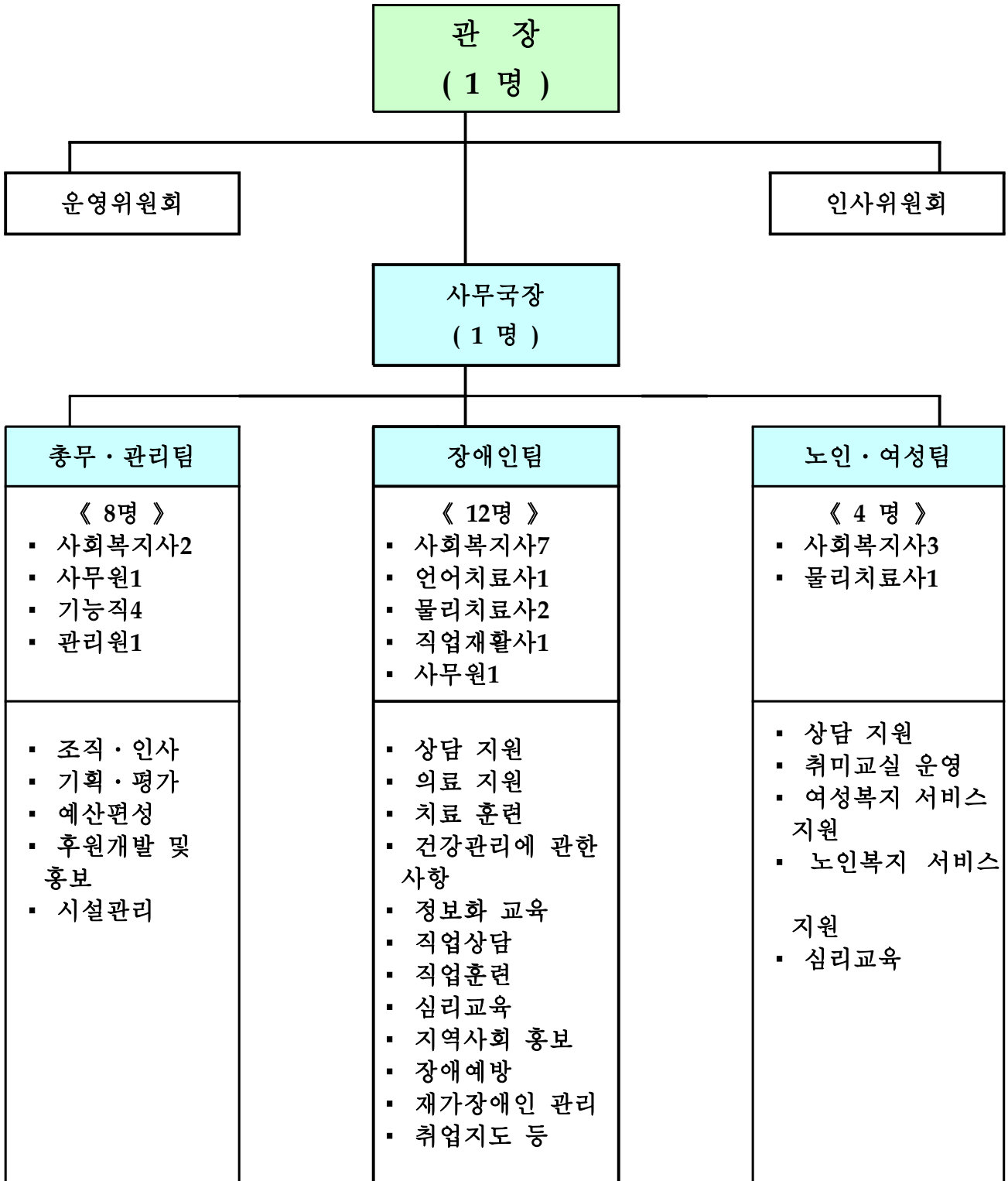
- 수탁운영자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거 편성하여 운영
- 향후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증가 등을 감안 인력 조정 운영

구분	소요인원				조정인원	개관시최소인원	비고
	계	노인시설	여성시설	장애인시설			
계	35 (30)	10 (7)	3 (3)	22 (20)	<b>26</b>	<b>10</b>	
관장	3 (3)	1 (1)	1 (1)	1 (1)	<b>1</b>	<b>1</b>	
사무국장	2 (1)	1		1 (1)	<b>1</b>	<b>1</b>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14 (12)	3 (2)	1 (1)	10 (9)	<b>12</b>	<b>3</b>	
언어치료사	1 (1)			1 (1)	<b>1</b>		
물리치료사	4 (3)	1 (1)		3 (2)	<b>3</b>	<b>1</b>	
직업재활사	1 (1)			1 (1)	<b>1</b>	<b>1</b>	
사무원	2 (2)	1 (1)		1 (1)	<b>2</b>		
운전기사	1 (1)			1 (1)	<b>1</b>	<b>1</b>	
영양사	1	1			<b>1</b>		
조리사	2 (2)	1 (1)		1 (1)	<b>1</b>	<b>1</b>	
미화원	1 (1)			1 (1)	<b>1</b>		
시설관리인	3 (3)	1 (1)	1 (1)	1 (1)	<b>1</b>	<b>1</b>	

※ 근거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3조

◇ 조직 및 기능

【 조직 : 1국 3팀(26명) 】



## V. 소요예산

### ○ 소요 인건비(26명기준)

(단위 : 명, 천원)

구분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계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사	사무원	운전기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원	미화원
인원	26	1	1	12	1	3	1	2	1	1	1	1	1
인건비	503,706	29,752	26,738	235,272	18,738	56,214	18,738	34,484	16,754	16,754	16,754	16,754	16,754

※ 장애인복지관 종사원 자격 기준에 근거

### ○ 소요 인건비(10명기준)

(단위 : 명, 천원)

구분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계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사	사무원	운전기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원	미화원
인원	10	1	1	3		1	1		1		1	1	
인건비	219,800	29,752	26,738	58,818		18,738	18,738		16,754	16,754	16,754	16,754	

※ 2008년 당초예산 388,372천원(도비 46,000, 군비 342,372) 편성

- 민간위탁금 388,372천원(인건비 230,000, 운영비 158,372)

## VI. 위탁 추진계획

### □ 수탁자 선정 방침

-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 유지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 보장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시 재공고



## □ 위탁개요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위탁기간 : 5년 이내(재계약 가능)
- 위탁업무
  - 삶의 쉼터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관리
  - 노인·여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신청·접수
  - 수탁법인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 심의위원 : 6인 이상 ~ 9인 이하
  - 위원구성 : 관계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 선정기준 : 평가항목, 세부항목 별도 작성
    - ⇒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기준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 협약체결 :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VII. 추진일정

- 2007. 11. 9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공포 예정
- 2007. 11. 12 :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의회 동의안 상정
- 2007. 12. ~
  -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 수탁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 장비 및 집기 구입
- 2008. 03 : 개관(예정)

##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③삭제<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관계법령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12.3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 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관계법령

### □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능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3(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남녀평등교육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 관계법령

###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4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등 당해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관계법령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관계법령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거창군사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